# 무배당 흥국 퇴직적립보험

# 약관

# 무배당 흥국 퇴직적립보험 약관

### 제1조(목적)

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"법"이라 합니다) 제16조에 기초하여 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와 퇴직적립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.

##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"신탁업자"라 함은 법 제16조 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.
- 2. "보혐료"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3. "보험금"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령", "시행 규칙"이라 합니다)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# 제3조 (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)

이 계약의 보험계약자(이하 "계약자"라 합니다) ·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및 보험수익자(이하 "수익자"라 합니다)는 신탁업자로 합니다.

#### 제4조(신탁업자의 수행업무)

-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5조 (보험회사의 수행업무)

보험회사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- 1. 보험료의 수령
- 2.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
- 3. 기타 필요한 사항

#### 제6조 (계약의 성립)

-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 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이루어집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(보험증권)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 다만,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 제7조 (보혐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)

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(이하 "약관"이라 합니다) 및 업무협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(사이버몰)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업무협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업무협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, 약관 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.

#### 제8조 (보험기간)

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.

#### 제9조 (보험료의 납입)

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
### 제10조 (단위보험)

- ① 이 계약에서 "단위보험"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,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"이율보증기간"이라 합니다.
-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,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결 정한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.
-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,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.

# 제11조 (적용이율)

- ① 회사는 "별표 1"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1일 및 16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확정급여형의 경우 시장상황,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적용이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12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
-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#### 제13조 (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)

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

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
-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 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+1%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# 제14조 (해지환급금)

-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 (별표2 참고)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, 전출입, 제도변경으로 인한 해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 제15조 (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)

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.

# 제16조 (배당금의 지급)

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.

# 제17조 (소멸시효)

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, 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#### 제18조 (해지시 구비서류)

제12조(계약의 해지)에 의한 해지시에는 "해지청구서(회사양식)"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 제19조 (분쟁의 조정)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20조 (관할법원)

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21조 (약관의 해석)

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.

# 제22조 (준거법)
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
# 제23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# 제24조 (예금보험에 의한 지급 보장)

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. (단,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
# 제25조 (기타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.

#### 이율의 적용방식

- 회사는 매월 1일 및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,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하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.2%로 합니다.
- 다만,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,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적용이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.

각 단위보험별 규모	최저한도	최고한도
5억원 미만		기준이율의 170%
5억원 이상~10억원 미만		기준이율의 180%
10억원 이상~30억원 미만	기준이율의 80%	기준이율의 190%
30억원 이상~100억원 미만		기준이율의 200%
100억원 이상		_

(주) 한도 산출이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

○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「국고채 수익률」, 「회사채 수익률」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.

#### [1년형 기준이율]

o 지표금리(%) = 0.7 × A1 + 0.3 × A2

A1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: 회사채(1년만기,무보증,AA-) 수익률의 평균값

# [2년형 기준이율]

○ 지표금리(%) = 0.7 × A1 + 0.3 × A2

A1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 : 회사채(2년만기,무보증,AA-) 수익률의 평균값

#### [3년형 기준이율]

○ 지표금리(%) = 0.7 × A1 + 0.3 × A2

A1 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 : 회사채(3년만기,무보증,AA-) 수익률의 평균값

- 주) 1.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 균값으로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 적용함
  - 2.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 적용함
  - 3. 평균값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.

# 시장가격조정률

- 1.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(MVA) 적용합니다.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(1-시장가격조정률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.
- 2. 시장가격조정률(MVA; Market Value Adjustment)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
$$MVA = 1 - [(1 + i_i) / (1 + i_h)]^{n+m/12}$$

- (1) MVA의 최대한도는 5%, 최소한도는 0%로 합니다.
- (2)  $i_j > i_h$  인 경우 또는 퇴직, 전출입, 제도변경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MVA=0으로 합니다.

주)

- ① 잔여보증기간 : 단위보험 해지일(변경일)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
  - n :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
  - m: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(월미만 절상)
- ② i; :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점의 적용이율의 기준이율
- ③ i<sub>h</sub>: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(변경)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잔여보증기간 1년이상인 경우: i<sub>h</sub> = i<sub>h-1</sub> + (i<sub>h+1</sub> - i<sub>h-1</sub>) × m' / (12×n') 잔여보증기간 1년미만인 경우: i<sub>h</sub> = i<sub>h+1</sub> (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)
  -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 중
    - · i<sub>h-1</sub> :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(변경)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
    - ·  $i_{h+1}$  :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(변경)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
  - n' :  $i_{h-1}$  이율보증기간부터  $i_{h+1}$ 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
  - m': i<sub>h-1</sub>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(월미만 절상)
- 3. 시장가격조정률(MVA)을 적용한 해지환급금은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.